

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		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(사법지원심의관)	성 명 이정목
연구자	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김성용 교수)		
연구기간	2018. 12. 26. ~ 2019. 4. 25. (4개월)		
연구금액	29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		
계약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수의계약		
연구결과	○관리위원회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실무상 문제점 분석 ○해외 유사 제도 소개 및 시사점 제시 ○관리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제시		
평가항목	상	중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		
내용의 완결성		○	
구성, 체제의 적정성		○	
참고문헌의 충실도	○		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		
제출기간 준수		○	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	○	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		
평과 결과 총평	별지와 같음		
공개 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공개		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1호 <input type="checkbox"/> 2호 <input type="checkbox"/> 3호 <input type="checkbox"/> 4호 <input type="checkbox"/> 5호 <input type="checkbox"/> 6호 <input type="checkbox"/> 7호 <input type="checkbox"/> 8호		
2019. 8. 19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			

평가 결과 총평

◎ 아래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여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목적과 부합함

(1)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요

- 관리위원회 제도의 도입 목적, 법적근거, 연혁 등
- 관리위원회의 구성, 회의 및 의결 내용, 업무 및 권한 소개

(2) 회생·파산위원회 제도 소개

- 도입배경, 조직과 구성, 업무 및 권한, 현황 소개

(3) 관리위원회 유사 해외 제도 소개

■ 주요 내용

-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의 관리위원 유사 제도 소개

■ 수행 내용

-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(Bankruptcy Administrator, 이하 'BA') 제도
 -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와 법무부 소속 도산절차 감독 기관인 연방관리관(UST) 비교
 - 미국 연방파산관리인의 선임과 해임, 소속과 지위, 기능과 역할 소개
- 영국의 제도: 도산실무가(Insolvency Practitioner) 및 도산국(the Insolvency Agency)
 - 도산실무가 제도의 도입 배경, 도산실무가의 업무, 도산실무가의 자격 등
 - 도산실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도산국의 업무 및 활동
- 독일의 제도: 사법보좌관 제도
 - 도산법원 및 사법보좌관의 역할
 - 독일의 사법보좌관 제도와 우리의 사법보좌관 제도 비교 및 시사점 제시
- 일본의 제도: 회사갱생절차 및 민사재생절차의 감독위원 제도

- 감독위원 제도 개요, 감독위원의 직무 및 지위

(4)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

- 관리위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- 각 의견들에 대한 검토
 - 대심구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
 - 재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의 분리, 법원과 분리된 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
 -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
 - 관리위원의 허가사무처리가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의견

(5) 관리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

- 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하여
 - 현실상 단기간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, 향후 전문법관 양성 및 도산절차 관계인들의 경험 축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줄어나갈 여지 있음
- 회생·파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
- 관리위원회 인력 구성 등에 관한 의견
 - 현재 시점에서 종전과 같이 금융기관 출신 관리위원을 다수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점검

◎ 관리위원회의 제도적 개선방향 설정에 근거로 활용

- 회생·파산위원회의 상임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 및 각 회생법원 상임 관리위원 선발 기준 제시
-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
- 각국 유사 제도로부터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